

명예교수 운영세칙

제정 1997. 2.26

개정 2001. 6. 1

개정 2006.11.16

개정 2008. 1.28

개정 2010. 5.25

제 1 조(목적) 이 세칙은 본 대학 학칙 제72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의거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명예교수의 자격, 선임절차,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명예교수는 퇴임 이후에도 학교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직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.(개정: 2010.5.25)

제 3 조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에서 퇴직당시 전임교원으로 있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(개정: 2010.5.25)

1.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
2.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교육, 연구 및 봉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자

제 4 조(선임) 명예교수는 제3조(자격)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: 2008.1.28)

제 5 조(처우) ① 명예교수는 70세까지 강의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명예교수가 강의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. 단, 대학원생의 논문지도교수는 될 수 없다.

③ 명예교수에게는 필요한 경우 소정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 6 조(해임) 총장은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
2.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

제 7 조(준용기준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7년 2월 26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(자격)는 개교20주년까지는 대학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전 규정인 명예교수규정은 이 세칙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1월 28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고 이 세칙 개정일 이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을 불문하고 동 세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0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